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61호)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64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1.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	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	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	2
III. 검토의견	4
1.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	4
가. 각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7
다. 관계기관 의견	10
참고자료 1. 시·군법원 관할인구 수 현황	11
참고자료 2. 시·군법원 접수사건 수 현황	12

I. 제안경위

1.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

가.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25.

다. 회 부 일 : 2024. 9. 26.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

가.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25.

다.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시·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

현행법상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여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

가. 각 개정안의 내용

- 양 개정안은 시·군법원에도 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확대함으로써 시·군법원을 통해 보다 확대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은 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

현행	개정안
제3조(<u>합의부지원</u>) (생략) <u><신설></u>	제3조(<u>지원과 시·군법원의 합의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둘 수 있다.</u>

-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은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민사사건,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가사사건 등으로 현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보다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④ (생략)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u>가정지원</u> 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가정지원</u>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이하 “합의부 설치 시·군법원”이라 한다)-----.
<u><신설></u>	<u>제34조의2(합의부 설치 시·군법원의 관할 등) ① 합의부 설치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u> <u>1.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민사사건</u> <u>2.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u> <u>3.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가사사</u>

현행	개정안
	<u>건</u> <u>② 합의부 설치 시·군법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u> <u>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u> <u>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u> <u>3. 시·군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u> <u>4. 다른 법률에 따라 시·군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u>

나. 검토의견

-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법원으로(「법원조직법」 제3조제4항),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확인사건을 담당하며(「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시·군법원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두고 있지 않음(「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제5항).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시·군법원 설치 이전에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순회심판소를 두었으나, 월 1회 정도만 재판을 개정하는 등 비상설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4765호)을 통해 1995년 9월 1일 순회심판소가 폐지되고, 105개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음.
-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¹⁾ 및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시·군법원은 총 99개이며, 시·군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의 수는 총 77명임²⁾.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시·군법원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하고 있는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 판사의 수가 법원의 수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군법원 중에서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민사사건과 가사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2024. 12. 18. 기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법원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이 시·군법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확인사건 등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인력·조직 등이 이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는 점,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법원 지원이나 가정법원 지원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시·군법원이 소속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과의 권한권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시·군법원을 통해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법원의 설치 목적과 기능, 시·군법원의 시설과 인력 규모,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와 사건 수 및 그 증가 추이, 전자소송, 영상재판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시·군법원 관할인구 수 현황

(2024. 12. 31. 통계청 인구 기준)

순위	시·군법원	인구(명)
1	오산시법원	1,210,886
2	용인시법원	1,085,864
3	광주시법원	726,725
4	김해시법원	531,676
5	파주시법원	511,308
6	김포시법원	486,853
7	구미시법원	404,820
8	세종특별자치시법원	390,685
9	양산시법원	359,531
10	아산시법원	355,014
11	광명시법원	278,167
12	익산시법원	268,001
13	여주시법원	267,816
14	경산시법원	266,398
15	거제시법원	232,972
16	이천시법원	222,443
17	안성시법원	193,949
18	창원남부시법원	188,739
19	서귀포시법원	182,020
20	당진시법원	171,931
21	광양시법원	154,692
22	포천시법원	141,463
23	양평군법원	126,804
24	나주시법원	116,654
25	사천시법원	108,504
26	칠곡군법원	107,383
27	영주시법원	98,870
28	영천시법원	98,143
29	보령시법원	93,780
30	무안군법원	92,687
31	음성군법원	91,236
32	동해시법원	87,675
33	동두천시법원	86,838
34	진천군법원	86,537
35	김제시법원	80,635
36	예산군법원	78,772
37	괴산군법원	73,423
38	강화군법원	69,402
39	문경시법원	67,257
40	홍천군법원	66,717
41	가평군법원	62,527
42	삼척시법원	61,735
43	화순군법원	60,735
44	고흥군법원	60,190
45	태안군법원	60,133
46	부여군법원	59,550
47	함안군법원	58,842
48	창녕군법원	56,085
49	예천군법원	54,609
50	영광군법원	52,098

순위	시군법원	인구
51	영암군법원	51,391
52	고창군법원	50,982
53	금산군법원	49,615
54	서천군법원	48,204
55	옥천군법원	48,204
56	부안군법원	48,066
57	고성군법원(경남)	48,005
58	울진군법원	46,124
59	횡성군법원	46,111
60	완도군법원	45,631
61	담양군법원	44,623
62	장성군법원	42,026
63	성주군법원	41,452
64	연천군법원	40,866
65	하동군법원	40,765
66	창도군법원	40,582
67	철원군법원	40,497
68	평창군법원	40,396
69	합천군법원	40,225
70	남해군법원	39,832
71	태백시법원	37,936
72	보성군법원	37,045
73	함양군법원	36,131
74	정선군법원	33,515
75	산청군법원	33,259
76	강진군법원	32,189
77	인제군법원	31,535
78	보은군법원	30,527
79	고령군법원	30,062
80	함평군법원	30,010
81	청양군법원	29,658
82	봉화군법원	28,836
83	진도군법원	28,478
84	양양군법원	27,489
85	단양군법원	27,352
86	고성군법원(강원)	26,999
87	순창군법원	26,822
88	곡성군법원	26,566
89	임실군법원	25,577
90	의령군법원	25,150
91	진안군법원	24,161
92	구례군법원	24,025
93	청송군법원	23,716
94	무주군법원	23,032
95	화천군법원	22,922
96	군위군법원	22,463
97	장수군법원	20,663
98	양구군법원	20,621
99	영양군법원	15,328

참고자료 2

시·군법원 접수사건 수 현황

(2023. 1. 1. ~ 2023. 12. 31.)

구 분	소 액	제소전 화 해	독 촉	전자독촉	조 정	즉 결	협의이혼	가압류	가처분	공 탁
법원·시·군법원										
합 의	54,572	365	17,670	143,672	1,968	23,275	17,237	29,172	232	1,489
정표연출동	1,129	13	315	2,409	51	403	256	535	4	44
고 파	156	-	25	462	8	87	56	61	-	2
남 가	125	-	48	356	6	53	57	82	-	1
인 천	513	2	111	1,579	12	342	235	211	2	6
수 양	2,662	26	506	6,794	95	1,020	974	1,134	12	89
성 원	345	-	96	811	11	306	83	156	2	10
부 가	211	-	70	581	11	125	76	157	2	8
성 원	2,943	46	698	6,718	123	732	1,112	1,303	18	49
광 양	3,616	64	925	9,152	183	1,538	701	1,583	22	95
여 양	5,408	64	1,340	13,005	223	1,687	1,031	2,016	24	110
평 이	3,903	24	992	8,470	139	1,831	985	1,935	6	109
안 양	514	2	159	1,286	21	282	177	372	9	14
광 양	1,300	7	384	3,047	33	329	441	512	5	28
천 이	844	5	170	2,569	35	441	309	412	5	25
강 양	1,134	15	238	2,034	39	677	380	873	5	30
화 양	77	-	41	266	4	6	47	65	-	4
화 양	215	-	77	602	3	42	85	132	-	43
화 양	76	-	38	204	2	17	22	42	-	3
화 양	155	-	24	290	3	8	22	26	-	3
화 양	181	1	96	510	10	133	107	112	2	27
화 양	329	9	103	1,038	11	90	208	177	2	10
화 양	114	2	55	404	14	127	46	96	1	-
화 양	83	-	28	280	2	54	-	57	-	5
화 양	83	1	24	267	7	-	-	41	-	-
화 양	137	1	54	380	2	76	24	47	-	1
화 양	144	-	97	429	5	54	85	69	-	5
화 양	159	1	56	469	6	30	44	95	1	5
화 양	1,373	16	316	3,221	71	425	390	472	8	28
화 양	281	-	121	504	8	175	72	140	2	3
화 양	211	-	57	545	5	113	72	182	2	6
화 양	474	2	96	1,322	14	124	171	220	1	19
화 양	359	-	195	775	10	153	78	170	1	12
화 양	80	-	35	195	1	30	31	51	2	4
화 양	166	-	94	466	6	128	105	83	2	1
화 양	256	2	77	698	24	62	56	172	3	5
화 양	791	4	251	2,287	22	538	331	483	2	20
화 양	1,713	4	366	4,617	35	599	889	1,076	4	66
화 양	103	-	62	292	4	33	13	65	-	2
화 양	199	-	78	730	9	69	55	102	-	-
화 양	394	1	228	1,168	13	136	149	228	1	13
화 양	534	5	236	1,483	21	196	147	298	2	30
화 양	62	2	16	205	2	30	1	69	-	2
화 양	163	-	58	398	7	15	68	131	2	9
화 양	107	1	62	337	10	112	39	99	1	-
화 양	416	-	141	1,110	11	294	177	250	2	8
화 양	615	-	165	1,539	17	340	211	280	5	12
화 양	1,062	1	213	3,255	34	752	456	538	1	3

구분		소액	제소전 화해	독촉	전자독촉	조정	즉결	협의이혼	가압류	가처분	공탁
법원·사·군법원											
서 안 영 봉 김 구 상 예 문 의 청 군 영 용 영 산 양 창 원 해 산 안 령 주 동 전 해 청 영 제 성 영 병 청 진 영 지 성 광 주 성 순 안 포 평 임 안 홍 진 천 성 홍 수 래 영 남 도 지 안 제 주 실 산 을 안 창 원 수 창 지 귀 포 시 법 원	지 법 원	204	-	90	390	8	91	19	90	-	8
	지 법 원	127	-	48	297	2	36	5	83	-	-
	지 법 원	304	3	121	762	6	137	180	156	3	1
	지 법 원	55	-	47	216	8	36	22	59	-	1
	지 법 원	1,837	1	526	5,349	47	552	1,009	907	2	25
	지 법 원	161	-	51	393	5	49	40	86	-	4
	지 법 원	202	-	74	609	4	224	65	137	-	3
	지 법 원	71	-	10	191	-	8	6	45	-	4
	지 법 원	55	-	26	160	1	7	4	48	1	1
	지 법 원	208	-	173	480	7	29	51	95	2	3
	지 법 원	54	-	27	105	12	8	8	29	-	2
	지 법 원	1,361	5	363	4,430	55	939	707	818	9	26
	지 법 원	664	-	159	2,329	16	255	264	332	3	6
	지 법 원	3,150	14	907	7,200	83	1,044	1,041	1,789	6	74
	지 법 원	308	-	140	794	10	68	39	200	1	4
	지 법 원	62	-	44	231	-	79	9	57	-	-
	지 법 원	124	-	107	366	6	34	15	114	2	4
	지 법 원	422	1	273	1,318	12	66	41	355	4	14
	지 법 원	106	-	72	408	4	33	4	136	1	9
	지 법 원	110	-	124	283	2	74	3	97	-	2
	지 법 원	1,035	3	251	3,804	25	91	548	926	2	36
	지 법 원	235	1	115	617	7	114	-	161	1	6
	지 법 원	255	1	94	742	10	149	45	159	2	10
	지 법 원	116	-	94	297	12	19	-	107	1	1
	지 법 원	93	-	69	313	4	19	-	119	-	14
	지 법 원	41	-	15	183	3	52	3	34	1	-
	지 법 원	271	-	97	472	4	122	23	97	1	12
	지 법 원	529	1	273	1,754	26	209	41	429	3	25
	지 법 원	158	-	96	480	4	146	11	85	-	2
	지 법 원	209	-	58	566	8	113	18	132	-	15
	지 법 원	177	1	63	500	4	114	2	125	-	3
	지 법 원	111	-	84	265	3	138	5	54	-	3
	지 법 원	251	-	109	705	11	102	1	118	3	7
	지 법 원	268	-	136	956	8	114	3	291	-	3
	지 법 원	92	-	50	351	1	-	-	72	-	2
	지 법 원	75	-	50	299	8	114	-	62	1	2
	지 법 원	192	-	209	597	5	99	10	137	1	5
	지 법 원	919	5	505	3,206	30	732	527	657	1	27
	지 법 원	81	-	45	261	6	12	1	41	-	2
	지 법 원	537	1	310	1,721	19	294	10	259	4	11
	지 법 원	166	-	301	693	2	147	56	286	-	3
	지 법 원	120	-	136	365	4	90	24	95	1	-
	지 법 원	61	-	46	174	5	21	6	38	-	8
	지 법 원	386	-	148	902	9	213	133	232	-	15
	지 법 원	62	-	32	153	4	24	16	56	1	6
	지 법 원	62	-	57	195	1	36	4	56	1	5
	지 법 원	1,260	4	557	3,404	31	677	588	491	3	51
	지 법 원	186	-	89	494	6	54	45	112	-	6
	지 법 원	161	1	91	355	11	129	43	87	-	10
	지 법 원	45	-	30	133	2	7	17	49	1	11
	지 법 원	66	-	21	208	-	1	19	53	-	4
	지 법 원	852	2	420	2,637	24	540	432	509	7	24

자료: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pp. 1238~1239